

www.moel.go.kr

2022. 8

우리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알기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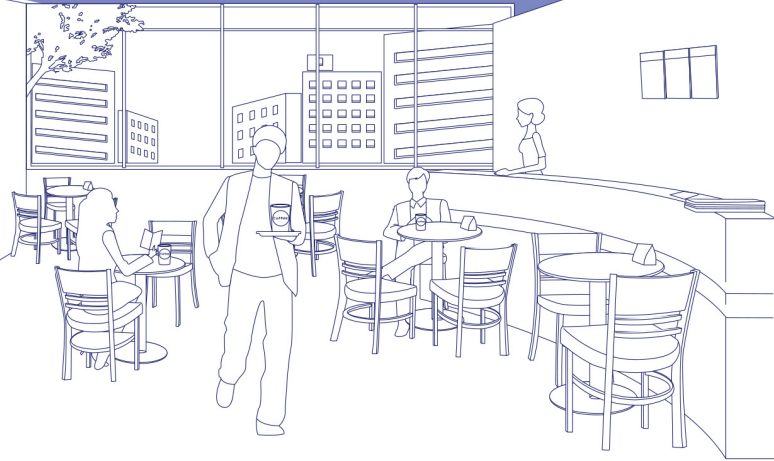
휴게시설 설치 A to Z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고용노동부

우리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알기쉬운 휴게시설 설치 A to Z



Contents

<u>Part 1.</u>	휴게시설 설치 안내	04
<u>Part 2.</u>	누가 설치하나요?	06
<u>Part 3.</u>	어떻게 설치하나요?	12
<u>Part 4.</u>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26
<u>Part 5.</u>	참고자료	36

Part 1

휴게시설 설치 안내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Part 2

누가 설치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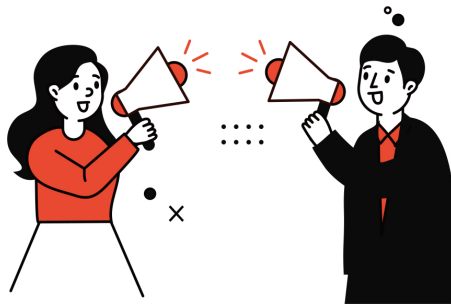


휴게시설은 누가 설치하나요?

휴게시설은 누가 설치하나요?

① 사업주

-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휴식시간이란?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합니다.
- *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도급인 / 수급인 / 관계수급인

-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주어집니다.
-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합니다.
-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1)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했다면,
- ▶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표1](p.1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을 참고해 주세요. (ex: 도급인의 사원증이 있는 경우에만 휴게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
- ▶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 도급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휴게시설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시 도급인만 제재대상인 경우에는 도급인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 (예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제1항제6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

(2)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그 시설 또는 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 다만,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3) 파견근로자 및 공무원의 휴게시설

-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포함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까지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Part 3

어떻게 설치하나요?





휴게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휴게시설은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① 크기

01 최소 바닥 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합니다.
 - 그리고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휴게시설이란?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예,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되며, 다수 설치하는 경우 모든 휴게시설은 최소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았을 때 보이는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여 최소면적을 판단합니다.

02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 협의한 면적이 최소 바닥 면적이 됩니다.

- 사업장별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주기, 동시 사용 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라는 의미이며, 휴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동시 사용인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의 크기를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사업장 휴게 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한 크기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노사협의회, 「산안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공동휴게시설은 우선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다른 사업장과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정한 후, 공동휴게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장별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공동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을 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 이상 이어야 합니다.

03 동시 사용인원이란 동일한 시간(휴게시간) 내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의 최대 합을 의미합니다.

- 동시 사용인원은 휴식주기, 교대근무,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사용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 교대 근무자는 1일 근무조 중 1개조 외에는 제외 가능하며, 휴식주기가 다른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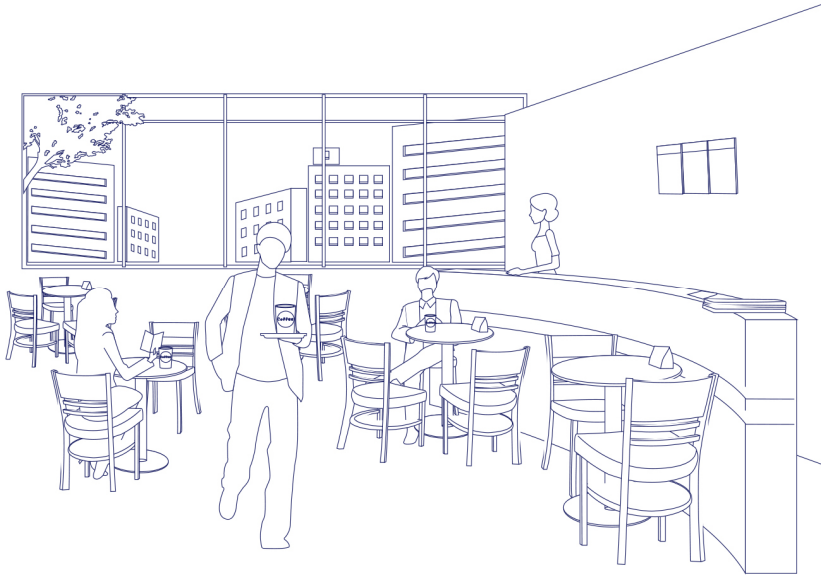
» 동시 사용인원 산정 예시?

- ❖ 1일 3교대(A조 20명: 07:00 ~ 15:00, B조 20명: 15:00 ~ 23:00, C조 20명: 23:00 ~ 07:00)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동시 사용인원은 20명입니다
- ❖ 휴게시간이 11:30 ~ 12:30인 근로자가 20명, 12:30 ~ 13:30인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의 동시 사용인원은 20명입니다.

- 사무직으로 사무실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공간에서 일하는 경우로서, 휴게시간 동안 업무관련자의 방문, 전화통화 같은 업무에서 일체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센터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04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합니다.



2 위치

01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감안해 노사가 협의하여 작업장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충분히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식시간(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판단 예시

- ❖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 다만, 휴게시간의 20%를 넘더라도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공간제약 등으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이용하는데 왕복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외부에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02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휴게시설은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만,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 위험이 없고, 분진·소음 및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벽 등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유해, 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온도, 습도, 조명

01 온도, 습도, 조명에 대한 적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온도, 습도, 조명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준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상시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고, 해당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온·오프 기능을 갖추면 됩니다.

»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낮아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장마기간*, 건조특보** 발효 기간 등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습도 기준(50%~55%)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더라도 근로자의 휴게시간 동안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장마기간의 실효습도는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

** 건조주의보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02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환기'는 '외부의 공기를 도입해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공기순환'을 의미합니다.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비품 구비 및 관리

01 의자가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의자가 비치되어야 하나, 휴게시설을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02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 등)는 휴게시설 내에 구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휴게시설에 비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5 목적 외 사용 금지

01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식시간에는 휴게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는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 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설은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판단 예시

- ❖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휴게시간에는 휴게시설로 이용
- ❖ 일반 음식점 또는 일반 매장의 경우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을 휴게시설로 이용
- ❖ 탈의실의 경우 탈의시간 외에는 휴게시설로 구분하여 이용

⑥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0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공장동·사무동·복지동 등)의 연면적 및 대지 등을 포함한 모든 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 건축물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도, 공용 화장실 등 공용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02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작업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해 그늘막 등으로 휴게시설을 간이로 설치한 경우에는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기준을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예시

- ❖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긴급 도로보수 작업, 맨홀 작업, 가로수 정비, 전기통신 작업 등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작업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간이로 설치한 시설물에는 그늘막, 천막, 몽골텐트 등이 해당됩니다.

03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선박 블록 하부 등 작업 위치가 높거나 깊어 작업장소 바깥에 있는 휴게시설 이용이 어렵고, 작업 근로자도 작업 위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경우 해당 휴게시설은 고정형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기준(습도)은 제외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7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 시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로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사무직이란?

- ❖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
- (산안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며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 관련 정보의 기록·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 직무가 문서처리인 경우를 사무직으로 분류합니다.

Part 4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1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02 과태료 부과 기준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원을 부과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 판단 예시

- ❖ 설치·관리기준은 1호(크기)부터 11호(목적 외 사용금지)까지 11개의 기준으로 규정
 - (예시) 2호(위치)와 5호(조명) 위반 시 위반한 기준이 2건이므로 1차 위반 기준으로는 2건 × 50만원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03 시행 시기

-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장): '22.8.18.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23.8.18.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23.8.18.

- 제도 시행일('22.8.18.) 이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은 시행일에 맞추어 휴게시설 설치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절차

- 특별지도기간('22.8.18.~10.31.) 동안, 접수된 신고사건 또는 사업장 점검감독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특별지도기간 경과 후 신고사건 조사나 사업장 점검감독과정에서 산안법 제128조의2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의 단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그 분산된 장소(지사, 사업소 등)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독립성 판단 기준

- ❖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로 결정됩니다.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②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③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④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서로 다른지 여부

- 장소적으로 분산된 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가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판단 예시

❶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각 다른 장소인 본사 a(15명), 매장 b(15명), 매장 c(20명)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A사)

- 분산된 각 매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장별 예산도 본사에서 편성하는 경우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각 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A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0명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며('22.8.18.부터 적용),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a, b, c)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❷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주택관리업자로 아파트와 위탁계약 하여 본사 a(15명)를 두고 아파트 b(15명), 아파트c(20명)에서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경우(B사)

-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아파트 단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조직운영이 각 아파트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
-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을 뿐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B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0명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며 ('22.8.18.부터 적용),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a, 아파트(b,c)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서울에 본사 a(15명)와 울산공장 b(50명), 여수공장 c(45명)가 있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C사)

- 울산, 여수공장의 공장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정해져 있고, 해당 공장의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따라 울산 및 여수공장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울산 및 여수공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 C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본사, 울산공장, 여수공장 단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 본사 a는 상시근로자가 20인 미만이므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며, 울산공장 b는 50인 이상이므로 '22.8.18.부터 제재대상에 포함되나 여수공장 c는 50인 미만이므로 '23.8.18.부터 제재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센터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판단 시점(즉 신고 접수일자 또는 사업장 감독일자)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20명(또는 10명)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20명(또는 10명)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공사금액 산정 방법 [건설업]

- 건설업은 사업장 단위인 공사현장별 공사금액으로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가 공사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총 공사금액에 포함시킵니다.

분리발주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각 공종별 시공사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되므로, 총공사금액은 각 시공사별로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공종별 시공사가 협의하여 공사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약직종의 범위는 무엇이고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라는 건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요?

- 7개 취약 직종은 ①전화 상담원(39912), ②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③텔레마케터(5313), ④배달원(922),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⑥아파트 경비원(94211), ⑦건물 경비원(94212)입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해당 직종(분류코드)의 구체적인 범위는 참고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7개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해당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이란 의미는 7개 해당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각 2명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 7개 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2명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 판단 예시

- ❖ 상시근로자가 15명인 사업장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1명과 건물 경비원(94212)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취약직종 근로자를 합산하면 2명이므로 이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 ❖ 상시근로자가 15명인 사업장에 건물 경비원이 1명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미만이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

Part 5

참고자료



01

휴게시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3단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 부 칙 〉 제2조(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 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 3. 제9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 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 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02

한국표준직업분류 설명 및 예시(7개 직종)

분류명 (분류코드)	수행업무 설명	직업예시
전화 상담원 (39912)	• 전화를 통하여 각종 문의사항, 불편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를 말한다. • 또한 창구의 이용자료 및 이용안내문 배치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CS확인원, as상담원, 고객 서비스원, 민원상담사무원, 사회보장보험민원상담원, 수도민원상담사무원, 요금 상담원, 우편물민원사무원, 유선방송민원상담원, 전화 고객상담원, 전화안내계장, 통신서비스상담원, 행정민원 상담사무원 등
돌봄 서비스 종사원 (4211)	• 환자,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활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요양 보호사(42111) •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제가 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주요 업무)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갈아입기, 이동, 체위교환과 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 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지원, 은행 일 등 업무지원을 해주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
	2) 간병인(42112) • 병원, 요양소, 기타 관련기관 및 가정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간병인

분류명 (분류코드)	수행업무 설명	직업예시
돌봄 서비스 종사원 (4211)	• (주요 업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며, 병실을 청소하고 침대보를 바꾼다. - 약이나 음식을 준비하여 환자에게 먹이고 음식료를 공급한다. - 등 마사지 및 운동 또는 대소변을 수발한다. - 통원치료 시 환자와 동행한다. 3)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3) • 장애인 및 노인의 거동을 돕거나 안전 또는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장애인 혼자서 사는 노인 등의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사회생활 등을 지원한다. 복지 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간호사 등을 보조하여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보호가 필요한 자를 수발하는 자도 포함한다. • (주요 업무)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거동을 돕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이동 도움, 식사 도움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커뮤니케이션 보조와 같은 사회 활동을 지원 - 주로 혼자 사는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언하고 지원, 후원, 지원물품 등을 전달하기도 한다.	복지시설 보조원, 장애인 활동 보조인, 노인 생활 관리자 ※ 제외 :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간병업무를 하지 않는 복지 및 요양시설 보조원(42199)
텔레 마케터 (5313)	• 각 업체에 소속되거나 용역을 받아 각종 서비스 홍보, 전화 판촉 등의 업무를 수행함. 우선 전화할 대상을 선정하고 스크립터를 작성한 후 전화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와 고객의 제품상담, 불만 사항 접수 등 전화를 받는 일을 담당한다. • (주요 업무) 고객에게 판매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거나 판매한 상품에 대한 고객의 불편사항 및 문의를 응대한다.	인바운드텔레마케터, 아웃바운드텔레마케터, 고객상담텔레마케터, 고객 관리텔레마케터, 부동산텔레 마케터, 콜센터텔레마케터, 인터넷가입유치텔레마케터, 금융텔레마케터, 신용카드 텔레마케터

분류명 (분류코드)	수행업무 설명	직업예시
	- 각종 제품 및 서비스를 전화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한다. - 판매한 상품 또는 판매를 위한 고객 상담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다.	
배달원 (922)	• 사업체,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소포, 물품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우편집배원(9221, 92210) •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관할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 주소지에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우체부, 우편 집배원, 우편 배달원
	2) 택배원(9222) •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준다. • (주요 업무)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제품을 출고 받아 운반용구에 적재하고, 배달예정 시간에 맞추어 고객에게 배달하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놓거나 설치하여 줌. 의뢰인이 빠른 배달을 요청한 문서, 소포 등을 안전하게 전달한다. - 택배원(92221)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 그 외 택배원(92229)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자를 말한다. 배달 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지정된 수령자에게 의류, 화장품, 꽃, 음식 등의 물품을 배달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한다.	택배 배달원, 퀵서비스 배달원, 지하철 택배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분류명 (분류코드)	수행업무 설명	직업예시
배달원 (922)	3) 음식 배달원(9223, 92230) •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말하며, 음식 배달을 위해 포장용기나 식기를 준비하거나 배달장소에 가서 음식값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는 등 각종 음식점 등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한다. • (주요업무) 고객으로부터 음식배달을 주문받고, 배달해야 할 음식과 수저 등을 준비하고 배달장소를 확인한다. -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여 배달장소로 해당 음식을 배달한다. - 고객에게 음식물을 전달하고 음식값을 계산한다. - 빈 그릇 등을 수거하거나 식당을 청소하기도 한다.	음식점 배달원
	4) 기타 배달원(9229) • 우유, 발효유, 녹즙, 신문, 학습지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 - 음료 배달원(92291) 우유, 녹즙, 발효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신문배달원(92292) 가정이나 사무실 등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대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 그 외 배달원(922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우유 배달원, 아구르트 배달원, 녹즙 배달원, 신문 배달원, ※ 방문판매 제외

분류명 (분류코드)	수행업무 설명	직업예시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941)	쓰레기를 수거하고 건물청소를 하는 직군이 여기에 분류된다.	
	1) 청소원(9411) - 건물 및 비행기, 선박, 기관차 등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일상적으로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생산시설, 운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한다. (주요 업무) 건물 및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바닥, 벽 등의 먼지를 털거나 쓸고 닦는다. - 건물청소원(94111)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 건물내부를 청소, 정돈하는 자를 말한다. - 운송장비청소원(94112)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외부, 바닥,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그 외 청소원(94119) 건물청소원 및 운송장비 청소원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9412) -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청결하게 유지하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 쓰레기를 싣거나 하차한다. 거리 공원 및 기타 장소를 청소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 쓰레기 수거원(94121)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통 등의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분뇨 수거도 여기에 포함된다. - 거리 미화원(94122)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사무실 청소원, 공공건물 청소원, 오피스텔 청소원, 아파트 청소원, 호텔 청소원, 숙박시설 청소원, 기관차 청소원, 선박청소원, 비행기 청소원, 버스 청소원, 병원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쓰레기 청소부, 분뇨 수거원, 거리 미화원, 공원 청소원, 재활용품 수거원,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 용품 수거원

분류명 (분류코드)	수행업무 설명	직업예시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941)	- 재활용품 수거원(94123)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아파트 경비원 (94211)	•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거나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거주자를 대신하여 배달물을 접수하거나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파트 경비원, 빌라 경비원
건물 경비원 (94212)	• 학교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일반적인 빌딩이나 업무공간 및 공장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한다.	상가 경비원, 건물 경비원, 병원 경비원, 빌딩 경비원, 시장경비원, 공장 경비원, 공사현장 경비원, 학교 경비원

*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확인 가능
통계청 홈페이지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직업분류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03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부서

지방관서	담당과	소재지	연락처
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 장교빌딩)	02-2250-5773 02-2250-5736
서울강남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대치동, 디마크빌딩)	02-3465-7340
서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본동 78) IT벤처타워 동관	02-6915-4325
서울서부	산재예방지도과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태영대시앙빌딩)	02-2077-6173
서울남부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02-2639-2270
서울북부	산재예방지도과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02-950-9856
서울관악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02-3282-9092
충부청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032-460-6247 032-460-6277
인천북부	산재예방지도과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	032-540-7986
부천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95, 금영프라자2차	032-714-8793
의정부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143	031-850-7632 031-853-6439
고양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031-931-2871
경기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34	031-259-0242 031-259-0253
성남	산재예방지도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	031-740-6723

지방관서	담당과	소재지	연락처
안양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031-463-7354
안산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B동	031-412-1975
평택	산재예방지도과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031-646-1198
강원	산재예방지도과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033-269-3583
원주	산재예방지도과	강원 원주시 만대로59	033-769-0822
강릉	산재예방지도과	강릉시 경강로 1991	033-650-2526
태백	근로개선지도팀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033-550-8632
영월	근로개선지도팀	강원도 영월군 단종로 8	033-371-6243
부산청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36	051-850-6491 051-850-6470
부산동부	산재예방지도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12	051-559-6646
부산북부	산재예방지도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	051-309-1553
창원	산재예방지도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28	055-239-6582
울산	산재예방지도과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92번길 22	052-228-1898
양산	산재예방지도과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055-370-0934
진주	산재예방지도과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황로 11번길 43	055-760-6568

지방관서	담당과	소재지	연락처
통영	산재예방지도과	경남 통영시 죽림1로 69	055-650-1941
대구청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053-667-6384 053-667-6367
대구서부	산재예방지도과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053-605-9156
포항	산재예방지도과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2번길8	054-271-6841
구미	산재예방지도과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054-450-3552
영주	근로개선지도팀	경북 영주시 변영로88	054-639-1164
안동	근로개선지도팀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36
광주	산재예방지도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43 광주종합청사 자충부	062-975-6394
전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063-240-3339 063-240-3337
익산	산재예방지도과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478	063-839-0038
군산	산재예방지도과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44	063-450-0554
목포	산재예방지도과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061-280-0173
여수	산재예방지도과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33	061-650-0133
제주	산재예방지도팀	제주 제주시 청사로59 제주종합청사	064-728-7142

지방관서	담당과	소재지	연락처
대전청	산재예방지도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042-480-6309
청주	산재예방지도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043-299-1317
천안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2 신성빌딩	041-560-2811 041-560-2837
충주	산재예방지도과	충주시 국원대로 3-3	043-840-4037
보령	산재예방지도과	충남 보령시 옥마로 42	041-930-6141
서산	산재예방지도팀	충남 서산시 쌍연남1로 37	041-661-5638